

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
제2023-02호

2023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
부산지역 수시 훈련과정 모집 공고

2023. 4.

1 사업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고용위기 사업장, 취약계층 등 직업훈련이 빠르게 공급되어야 하는 **훈련수요에 대한 대응 속도 강화 필요**
-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을 포함한 지역 기업체 및 산업계의 **수시 인력 및 훈련 수요에 즉시 대응**
- 현장성 높은 훈련 공급을 통한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(이하 지산맞)의 **효율적 개설**

□ 추진 근거

- 「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」 제23조(수시훈련과정 심사 및 승인)

□ 사업 내용

○ 사업 목적

- 연내 발생하는 부산지역 훈련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
- 부산지역 내 특화산업 및 신기술·신산업 훈련과정을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도 하에 지산맞 수시 훈련과정으로 효율적 개설·운영 도모

○ 지원 대상

- ① 지역 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등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산업
- ②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·신산업 또는 지역특화전략산업
-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대상 업종에 속하는 산업
- ④ IT·ICT서비스·SW개발, (정보)통신업, 콘텐츠·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
- ⑤ 취약계층(중장년, 경력단절여성 등) 특화과정
- ⑥ 그 외 정부정책 연계, 고용위기에 따른 유급휴가 훈련과정 등 훈련과정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훈련과정

- **훈련과정:** 위기 사업장 및 취약계층 대상 훈련을 중심으로, 기존 지산맞 훈련 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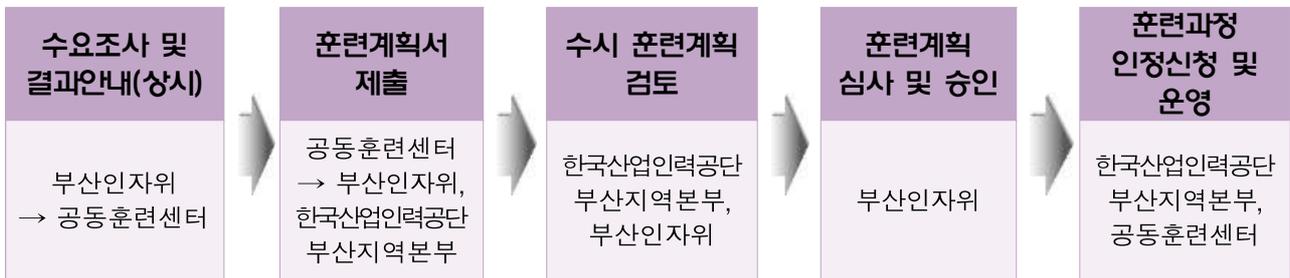
○ 기본 운영방침

구분	정기 훈련 과정	수시 훈련 과정
심사주체	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- 공단 본부	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
심사시기	전년도 4분기	계획 시행 이후 연도 중 필요 시
특징	기초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한 연도별 인력양성기본계획에 따름	지역 고용현안에 즉시 대응 및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도 중 상시 운영 가능

-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과정 설계·심사
- 공동훈련센터별 전체 목표인원(연인원)의 20% 내외 운영

○ 심사 및 승인

- 훈련예산: 2023년 부산지역 내 수시 훈련과정 예산 한도(365,488천 원) 내 승인
- 과정심사: 2023년 수시 훈련과정 심사체계 준용



2.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

1. 총괄

□ 부산지역 수시 훈련비용(예산): 365,488천 원

- 지역별 승인된 훈련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된 수시 훈련과정 심사 및 승인
(단위: 천 원)

계(A)	정기승인액(B)	수시훈련비용(A-B)
2,595,440	2,229,952	365,488

※ 훈련비용=훈련비+수당+숙식비

2. 참여 훈련기관

구분	내용
공동 훈련센터	○ 2023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 6개소
파트너 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결과 1년 이상 인증받은 기관에 한함 *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(한국폴리텍대학 등)은 인증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 - 단, ① 「대학기본역량진단(교육부 주관)」결과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(II유형), ②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결과 '인증유예' 기관, ③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라 행정처분 중인 기관은 참여 불가 ○ 비용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프라비용은 지원 불가하며, 훈련비용(훈련비+숙식비+수당+임금 등)만 지원 가능 - 매칭된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대한 HRD-Net 입력, 훈련비용 신청 등 행정처리 지원 ○ 기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훈련사업에 참여 중인 훈련기관도 요건* 부합 시 파트너 훈련기관으로 참여 가능 - 훈련과정은 사업 간 중복 불가 <p>※ 파트너훈련기관 신청 요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) 사업주 단체 및 그 연합체 3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 4)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5) 「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6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7)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3. 훈련 과정

□ 훈련과정 설계

○ 우선순위 고려사항

- ① 부산지역 과소공급 과정(수요조사 결과 반영)
- ② 지역 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등 부산인자위에서 필요하다고 심의·의결한 산업 관련 훈련과정
- ③ 지역특화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·신산업 훈련과정
- ④ 고용위기산업, 취약계층(중장년, 경력단절여성 등) 특화과정
- ⑤ 취업률(채용예정자), 수료율, 전년도 훈련규모 등 기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(채용약정서 등) 등 실적이 우수한 훈련과정
- ⑥ IT·ICT서비스·SW개발, (정보)통신업, 콘텐츠·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 대상 훈련과정
- ⑦ 그 외 정부정책 연계 훈련과정 등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훈련과정

○ 2023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(미개설된 훈련직종 우대)

- 채용예정자(양성)훈련: 19개 직종(미개설 직종 15개)

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	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
1	028 무역·운송·생산·품질 사무원	11	811 기계장비 설치·정비원(운송장비 제외)
2	131 컴퓨터하드웨어·통신공학 기술자	12	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원
3	133 소프트웨어 개발자	13	815 자동조립라인·산업용로봇 조작용원
4	134 데이터·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	14	821 금속관련 기계·설비 조작용원
5	140 건축·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5	824 용접원
6	151 기계·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6	825 도장원 및 도금원
7	153 전기·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7	834 전기·전자 설비 조작용원
8	158 소방·방재·산업안전·비파괴 기술자	18	836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조립원
9	415 디자이너	19	852 고무·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 기계 조작용원 및 조립원
10	621 항공기·선박·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	19개 직종	

* (음영셀) 2023년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 중 미개설 훈련직종

- 재직자(향상)훈련: 28개 직종(미개설 직종 14개)

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	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
1	028 무역·운송·생산·품질 사무원	15	815 자동조립라인·산업용로봇 조작용원
2	131 컴퓨터하드웨어·통신공학 기술자	16	816 기계 조립원(운송장비 제외)
3	133 소프트웨어 개발자	17	817 운송장비 조립원
4	134 데이터·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	18	821 금속관련 기계·설비 조작용원
5	140 건축·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9	822 판금원 및 제관원
6	151 기계·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20	823 단조원 및 주조원
7	152 금속·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21	824 용접원
8	153 전기·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22	825 도장원 및 도금원
9	155 에너지·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23	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용원
10	158 소방·방재·산업안전·비파괴 기술자	24	834 전기·전자 설비 조작용원
11	415 디자이너	25	835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생산기계 조작용원
12	621 항공기·선박·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	26	836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조립원
13	811 기계장비 설치·정비원(운송장비 제외)	27	852 고무·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용원 및 조립원
14	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원	28	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용원

* (음영셀) 2023년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 중 미개설 훈련직종

- 기존 지산맞 훈련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특화산업 및 신기술·신산업 분야,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정
 -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과정은 지양하고, 지역수요와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 훈련과정 우대
- 훈련시간
 -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720시간 초과 불가
 -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, 훈련기간 1개월 이상 및 월평균 훈련시간 120시간 이상 필수
- 개설 불가 훈련과정
 - NCS 경영·회계·사무(대분류 02) 분야의 중분류 01~03 등 기존 훈련기관 또는 타 훈련사업에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과정
 - 타 훈련사업에서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2023년도 지산맞 정기심사 승인 과정

- 훈련정원(총 인원 포함), 훈련시간, 교·강사, 시설·장비 등 기본적인 훈련과정 인정요건은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및 관련 매뉴얼 준수
- 훈련과정명 작성(신청) 시 유의사항

※ 수시 훈련과정명 입력(신청)시, 반드시 아래 형식(예시)에 의거하여 입력(신청) 요망

연번	구분	훈련과정명 (양식)	비고
1	일반	(수시) 000 향상과정_일반	※ 훈련유형이 중복되는 경우, 훈련과정명에 해당 키워드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- 훈련과정명 형식 미준수 시 유형별 훈련실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 <ex> (수시) 000향상과정_고용위기_유급
2	증장년ICT	(수시) 000 향상과정_증장년ICT	
3	고용위기	(수시) 000 향상과정_고용위기	
4	비대면	(수시) 000 향상과정_비대면	
5	유급	(수시) 000 향상과정_유급	

□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

- 2023년도 지산맞 수시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판단 기준
 -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기준 취업률 및 훈련생 지원 계획(채용약정서 등) 등이 담보되어야만 승인 및 운영 가능
 - 채용예정자 훈련의 훈련-취업 연계 강화 지원을 위해 훈련개시 전일까지 '채용예정자 훈련 운영 안내 확인서' 제출 필수
- ※ 훈련과정 승인·인정 후 HRD-Net 실시신고 시 '확인서' 증빙 첨부 필수(서식2 참조)
-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판단 기준

구분	내용
우수 취업률	○ 지산맞 채용예정자훈련 운영실적이 있는 공동훈련센터 (1-1) 동일·유사 훈련과정*을 운영하는 경우 (단, '23년 정기과정으로 승인·운영되는 과정은 참여 불가) - 동일·유사 훈련과정의 2개년 실적**으로 판단(기준 취업률 70% 이상 적용) (1-2) 동일·유사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- 해당 기관에서 운영한 지산맞 채용예정자 과정(전체) 또는 지산맞 이외 타사업(내일배움카드 등) 훈련으로 확대하여 2개년 취업률 및 취업률 관리방안 등 감안하여 판단
취업률 기준 완화	○ 신규 과정 및 지역특화·신기술 기반 훈련과정 (2-1) 채용예정자 실적이 없는 경우 - 1개 과정(1회차, 600시간 이내)에 한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(2-2) 신규과정(동일·유사 훈련과정 실적이 없는 경우)을 개설하려는 경우 - 기관의 지산맞 훈련 전체 2개년 실적을 적용하되 기준 취업률*** 완화(60% 적용) (2-3) 지역특화 및 신기술(4차 산업) 훈련과정의 경우 - 기준 취업률 완화(60% 적용)

구분	내용
훈련생 지원계획	○ 과정별 계획인원의 80%(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) 이상에 대해 채용약정서 제시 필수(서식1 참조)

* (동일·유사 훈련과정) NCS 소분류(대표)가 일치하고, 교과목 내용 및 시간 모두 80% 이상 일치하는 경우

** (2개년 실적) 훈련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(2021. 1. 1.~2022. 12. 31.)

*** (취업률) 훈련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실적의 산술평균

□ 훈련비용

○ 훈련비의 훈련단가는 NCS 기준단가의 300% 이내에서 지원

- 2023년도 지산맞 수시 훈련과정 훈련단가 지원 기준

구분	훈련단가
NCS 2~5수준 과정	100~150% 이내
NCS 4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특화·전략·위기 산업 과정	100~200% 이내
NCS 5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기술(4차 산업) 과정	100~300% 이내

○ 훈련비 지급 기준(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)

- 훈련비는 정산하지 않으며, 동일한 내용으로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

- 훈련비를 제외한 훈련비용의 지원기준은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17조를 따르며, 3개월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단위기간별로 중도 지급 가능

○ 훈련비용 지원요건 및 기준

항목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훈련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일 것 (파트너기관에 지불하는 훈련비 포함)	○ 실비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
훈련수당	① 협약기업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할 것 ②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다만,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	○ 사업주(또는 훈련기관)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 원까지 지원 ※ 단위기간 1개월 이상 및 월 평균 120시간 미충족 시에는 훈련수당 지급 불가

항목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임금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훈련일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①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(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)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	○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」 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
식비 또는 숙식비	①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(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)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	○ 식비는 1일 5천 원까지, 숙식비는 1일 14천 원(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천 원)까지 지원

※ 임금(유급휴가훈련의 임금 및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)은 훈련참여기업에게 직접 환급

○ 세부항목별 지원기준

항목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	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,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	○ 실비로 인정하되,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·장비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 * 파트너훈련기관은 임차비 지원 불가
강사료	① 공동훈련센터(파트너훈련기관 포함)에서 운영하는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 인정 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 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* 등급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	○ 시간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로 지급 불가 ○ 해당 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 강사로 활용 가능(다만, 강사료는 외부 강사료의 1/2 초과 불가) * 훈련기관이 신기술(4차 산업 중심)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료 지급 기준 등급별 지원한도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,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강사료 등급별 지원한도의 200% 이내에서 지원 가능
강사여비	① 강사료 지원대상 ①,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기관 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	○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
과정운영 보조인력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·지원하는 보조인력비	○ 시간당 지원단가는 사업연도 최저임금액의 130% 한도 ○ 훈련과정 회차당 1명까지 지원 가능 ○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(총 16시간)까지 지원 가능
운영 지원비	① 훈련과정에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운영자의 출장비용	○ 출장여비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
다과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	○ 1인당 1일 3천 원 한도

항목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제세 공과금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전기,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	○ 실비지원
실습 재료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실습재료 비용	○ 실비지원(다만, 프로젝트, 음향시설, 노트북 등 임차료는 불가)
교재 구입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	○ 실비지원
재해 보험료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훈련 참여생 보호를 위한 보험	○ 실비지원
그 밖의 훈련비용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, 문구비 등	○ 문구비는 1인 1차수 당 3천 원 한도 (다만, 1개월 및 120시간 이상의 채용 예정자훈련은 1인 1개월당 3천 원 한도) ○ 피복비 등은 실비지원
간접비	① 지산맞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재투자되는 비용	○ 간접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5% 범위 이내(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)

○ 등급별 강사료 지급 기준

등급 구분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	E등급
시간당 금액	20만 원 한도	15만 원 한도	10만 원 한도	7만 원 한도	5만 원 한도
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차관급이상 공무원 ·연구기관임원급 이상 ·부총장급(대학) 이상 ·박사 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·석사 취득 후 경력 20년 이상 ·학사 취득 후 경력 25년 이상 ·전문학사 취득 후 경력 27년 이상 ·경력 30년 이상 ·기업체 사장급 (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4급 이상 공무원 ·책임연구원급(연구 위원)이상 ·정교수급 이상 ·박사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·석사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·학사 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·전문학사 취득 후 경력 17년 이상 ·경력 20년 이상 ·기술사, 기능장 또는 변호사, 변리사, 공인 회계사, 감정평가사 등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5급 이상 공무원 ·선임연구원급(부 연구위원) 이상 ·부교수급 이상 ·박사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·석사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·학사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·전문학사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·경력 15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6급이하 공무원 ·선임연구원급 (원급) 이상 ·조교수급 이상 ·박사 취득 후 즉시 이상 ·석사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·학사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·전문학사 취득 후 경력 8년 이상 ·경력 11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「국민 평생 직업 능력개발법 시행령」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※ 위 강사료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

3 훈련과정 운영 유의사항

- 운영절차는 「사업주훈련 지원규정」, 「자산맞 운영규칙」 등을 준용
- 훈련과정은 '23. 12. 31.까지 종료되어야 하며, 공동훈련센터 등 훈련기관에서는 실적 관련 데이터 제공 등에 적극적 협조
-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HRD-Net 훈련실시 신고시 '채용예정자훈련 운영 안내 확인서' 제출 필수(서식2 참조)
- 승인받은 회차별 정원의 120%까지 실시신고 가능
 - ※ 단, 훈련시설·장비가 실시인원에 부합해야 함
- 대면 집체훈련을 원칙으로 하되, 쌍방향 훈련에 한해 집체훈련 대체 허용
- 지역 고용현안에 즉시 대응을 위해 최종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 훈련실시 권장
- 회차 추가는 승인 이후 연간 최대 3회까지 가능
 - 지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 여부 확인 후 운영 가능하며, 보고가 아닌 훈련 실시 이전에 공문으로 사전 신청 후 실시 가능

연번	훈련과정ID	훈련과정명	최초 승인일자	'23년 기승인 회차 추가	금번 회차 추가	훈련예정일
1	ABB20220000000000	기계설계_일반	2022. 00. 00.	-	1회	2023. 00. 00.~xx. xx.
2	ABB202200000000xx	전기용접_심화	2022. xx. xx.	1회	2회	2023. 00. 00.
	...					

- 단, 채용예정자훈련을 회차 추가하려는 경우, 기 실시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70% (또는 60%) 이상이면서, 과정별 계획인원의 80% 이상에 대한 채용약정서(기제출한 채용약정서와 중복 불가) 사전 제출 필수
 - ※ 회차 추가 시 주의사항
 - ('23년 기승인 회차 추가) + (금번 회차 추가): 최대 3회 초과 불가
 - 훈련과정ID: 행정지원시스템에서 부여받은 훈련과정ID를 재확인 필수
 - 훈련예정일은 신청 이후,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추가한 회차만큼은 반드시 운영
 - * 회차 추가 후, 미실시하더라도 추가한 훈련비 금액만큼 타 훈련과정 회차 추가 및 승인 불가
- '23년도 수시 과정 운영실적 등에 대해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지표에 반영 예정 (목표대비 실시인원, 취업률, 수료율 등)
- '24년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 시, 기관별 '수시 목표 달성률' 및 '훈련비 집행률' 반영 예정
 - 지역 훈련비 예산 배정 시, '수시 훈련과정 실적' 및 지역 내 '훈련비 집행률' 반영 예정

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·접수기간: 사업기한(~12. 31.) 제출 월 5일 17:00까지 제출(총 4회)

-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
- 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**훈련과정일람표** 사전 제출 필수
 - 제출기한: 전월 25일 12:00(정오)까지
 - ※ 제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, 전일까지 제출
 - 제출방법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메일 제출
(busanhrd@korcham.net, sonse1@korcham.net)
 - 제출내용: 2023년 0차 수시 훈련과정 일람표_공동훈련센터명

□ 제출서류

- 2023년 부산지역 수시 훈련과정 신청서 및 훈련계획서
 - 2023년도 0차 지산맞 수시 훈련과정 훈련계획서(원본) 및 제출 공문 1부
 - 훈련계획서 제본 7부(공단 부산지역본부 2부, 부산인자위 5부)
 - 훈련계획서 전자파일(USB) 1개 제출
 - 전자파일(USB)에 신청 공문, 훈련계획서, (최종)훈련과정일람표, 훈련과정운영비 내역, 강사비용 산출내역을 각 1부씩 수록하여 제출(※ e-mail 제출 불가)
- 기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요청 서류 등

□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□ 접수처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및 공단 부산지역본부

5 추진계획(안)

□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

심사	훈련계획서 접수	훈련계획 사전 검토	훈련계획 심사 및 승인	공단 지부 과정 인정	훈련 실시
	훈련기관 → 부산인자위, 공단 지부	공단 지부, 부산인자위	부산인자위	부산인자위 → 공단 지부	훈련기관
1차	4. 28.(금)	5. 3.(수)	5. 9.(화)~12.(금)	5. 15.(월)	5. 16.(화)~
2차	6. 5.(월)	6. 9.(금)	6. 13.(화)~21.(수)	6. 22.(목)	6. 23.(금)~
3차	7. 5.(수)	7. 10.(월)	7. 14.(금)~21.(금)	7. 24.(월)	7. 25.(화)~
4차	9. 5.(화)	9. 8.(금)	9. 12.(화)~20.(수)	9. 21.(목)	9. 22.(금)~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